
EU 디지털 시장 법

EU Digital Market Act

수정안 요약 정리

2022.03.2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김민 (진보네트워킹센터)

개요

디지털 시장 법 Digital Market Act

- 디지털 시장 내 “게이트키퍼(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특정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위함
 -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 특정 의무를 부여
 - 사업이용자(**business user**)에게는 더 공정한 사업 환경과 시장의 혁신 및 경쟁 (p2b)
 - 최종이용자(**end user**)에게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정한 가격도 약간 첨부 (p2c)
-

DMA의 범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 Core platform services

- DMA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서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에만 적용
 - 제2조(2)에서 11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정리한 한정적으로 열거된(closed) 목록 정의
 - 이는 추후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등을 통해 추가 가능
-

DMA의 범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 Core platform services

(a) 온라인 중개 서비스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사용자(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 예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

(b) 온라인 검색 엔진 online search engines

사용자가 쿼리(키워드 검색 또는 음성 지시)를 통해 모든 웹사이트(또는 특정 언어의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

- 예시 : 구글

(c)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

최종 사용자가 글을 쓰거나 채팅을 통해 다른 이들과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고 나누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 예시 : 페이스북
-

DMA의 범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 Core platform services

(d) 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video-sharing platform services

영상 프로그램 및/또는 사용자가 제작한 영상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편집 책임(editorial responsibility) 없이 콘텐츠 제공의 구성을 알고리즘 등을 통해 결정하는 서비스.

- 예시 : 유튜브

(e) 전화번호에 의존하지 않는 개인간 통신 서비스 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국가 또는 국제 번호 계획을 통해 공개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번호와 연결하지 않고 개인과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예시 :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등

(f)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서비스

- 예시 : 안드로이드, iOS

DMA의 범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 Core platform services

(fa) 웹 브라우저 web browsers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에 호스팅되어 있는 웹 콘텐츠에 접근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독립적인 브라우저와 내장형 브라우저 모두 포함)

- 예시 :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네이버 웨일

(fb) 가상 비서 virtual assistants

오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인지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상품과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되고 요구, 업무 또는 질문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이자 나아가 자체적인 또는 제3자 서비스 및 기기에 접근하거나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 예시 :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스

(fc) 커넥티드 TV connected TVs

음악 및 영상 스트리밍 또는 사진 감상 등의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연결된 텔레비전을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 예시 : 애플TV, 아마존 fire TV, 삼성TV
-

DMA의 범위

핵심 플랫폼 서비스 Core platform services

(g)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cloud computing services

공유 컴퓨팅 리소스의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 예시 : 아마존 웹 서비스 (AWS)

(h) 온라인 광고 서비스 online advertising services

(a)에서 (g)까지 나열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광고 서비스

- 예시 : 구글 ADs
-

DMA의 범위

게이트키퍼의 기준

- DMA의 범위는 그 의무사항이 모든 CPS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제공자에 적용
 - 사업체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 (제3조(1))
 - 또한 사업체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을 규정하기 위해 규모에 기반한 **size-based** 정량적 기준을 제시 (제3조(2))
-

DMA의 범위

게이트키퍼 기준

3조1(a)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

정량적 기준 -> 최근 3개의 사업연도 동안 연 매출액이 80억 유로 이상 또는 평균 시가 총액이 800억 유로 이상인 경우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장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3조2(a))

(*수정 전 : 최소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활동하면서, 유럽경제권역(EEA)에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의 연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평균 650억 유로 이상인 경우(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이상윤)

DMA의 범위

게이트키퍼 기준

3조1(b) 사업이용자가 최종이용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CPS를 운영

it operates a core platform service which serves as 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or and end users to reach other end users

정량적 기준 ->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월간 활성 최종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활성 사업이용자 수가 10,000개 사 이상인 경우(3조2(b))

(*수정 전 : 유럽경제지역이 아닌 유럽연합 내였음. 또한 이용자 수 측정을 위해 CPS에 특정된 지표를
부록I를 통해 제공)

DMA의 범위

게이트키퍼 기준

3조1(c) 운영하는 서비스 관련 확고하고 견고한 지위를 갖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it enjoys an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in its operations or it is foreseeable that it will enjoy such a position in the near future.

정량적 기준 -> 지난 2개 사업연도 각각 b의 기준이 충족될 경우 (3조2(c))
(*수정 전 : 지난 3개 사업연도였음)

DMA의 범위

**집행위원회는 최소 3년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들
또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 판단 기준
(제3조1)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최소 매년 CPS
목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제4조2)**

게이트키퍼 지정 절차

1 - 제3조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약 사업자가 제3조2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개월 내에 집행위원회(EC)에 신고해야 함
 - 해당 신고에서는 제3조2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1의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3조3, 제3조4)
 - 집행위원회는 신고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관련된 CPS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3조4, 제3조7)
 - 게이트키퍼는 CPS가 집행위원회로부터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DMA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8)
-

DMA의 범위

게이트키퍼 지정 절차

2 - 제3조1의 모든 기준은 충족하지만 제3조2를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시장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예비
조사 결과preliminary
finding를 전달해야 함.
(제15조2)**

**집행위원회는 시장 조사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함(제15조1)**

집행위원회는 제3조1의 모든 기준은 충족하지만 제3조2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장 조사market
investigation를 수행해야 함 :

- 사업 규모, 운영 및 지위
 - 사업이용자 및 최종이용자 수
 -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기반 이점으로 인한 진입장벽
 - 규모 및 범위 효과
 - 사업이용자 및 최종이용자의 고착(lock-in)
 - 사업이용자의 멀티호밍 정도
 - 다각화 전략 conglomerate strategies (예: 수직적 통합 또는 레버리징)를 실행하기 위한 능력
 - 기타 시장의 구조적 특성
 -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들의 예측 가능한 발전 또한 고려해야 함 (제3조6)
-

의무사항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a)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결합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는 제5조와 제6조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지켜야 함.

*DMA의 제5조와 제6조는 게이트키퍼의 의무사항, 제6조는 특히 더 구체적으로 특정된 의무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협의에 따라 특정하게 지정될 수 있음 (제7조에서 설명)

*별개로 제12조와 제13조에는 추가적인 투명성 의무가 있음

게이트키퍼는 GDPR에 부합하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 CPS를 통해 얻은 개인 데이터를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또는 제3자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와 결합하거나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게이트키퍼의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예시 : 페이스북이 최종 이용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얻은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다른 서비스에서 얻은 데이터와 결합할 수 없음.



의무사항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b) 동일성 조항 금지

사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것과 다른 가격 및 조건으로 제3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최종이용자에게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예시 : 아마존은 전자책 출판사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동일한 전자책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방지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c) 안티 스티어링 Anti-steering 금지

사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게이트키퍼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최종이용자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위를 허용

- 예시 :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스포티파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결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앱에서 이용자에게 홍보/정보를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없음

의무사항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ca) 사용 제한 usage restrictions 금지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CPS 외부에서 사업이용자로부터 콘텐츠, 구독, 기능 또는 기타 아이템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접근이 최종이용자의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저해하지 하며 이를 게이트키퍼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 예시 : 애플은 스포티파이 앱 외부에서 구독권을 결제한 사용자가 해당 구독권을 앱에서 사용하는 걸 제한할 수 없음

의무사항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d) 사업이용자가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막는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는 사업이용자가 문제제기를 위해 법원을 포함한 관련 당국 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 아마존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마존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신고하는 판매자를 (계약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의무사항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e) 사업이용자에게 자신의 부가 서비스(ID 신원확인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는 CPS를 이용하는 사업이용자에게 게이트키퍼의 ID 서비스를 사용, 제공, 상호운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예시 : 애플은 앱 개발자가 앱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애플의 자체 로그인 서비스인 'Apple로 로그인' 서비스를 통합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의무사항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f) 서로 다른 CPS를 함께 묶어서 제공하는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는 사업 또는 최종 이용자가 자신의 CPS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다른 CPS에 등록 또는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예시 : 구글은 유튜브의 광고 인벤토리에 입찰하는 광고주들에게 구글의 광고 플랫폼인 Google Ads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g) 광고 중개에서의 가격 투명성 보장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는 광고주, 퍼블리셔 및 광고주와 퍼블리셔에 의해 승인된 제3자에게 광고 가격과 보상에 대한 투명성(광고주 및 광고 중개자의 입찰에 대한 가격 조건/경매 과정에서 비가격 기준을 포함한 요금 산정 방식 및 계획/광고주 및 퍼블리셔가 지불하는 대가 및 수수료 및 광고 게시에 대해 퍼블리셔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보수/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각각의 관련 광고 서비스에 대해 퍼블리셔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보수)을 제공해야 함.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자 고품질이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시간이어야 함.

- 예시 : 구글은 광고주가 Google Ads에 지불한 금액 중 퍼블리셔가 얼마를 받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됨

의무사항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ga) 사업이용자의 데이터를 경쟁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사업이용자와 경쟁하는 게이트키퍼는 사업이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업이용자와 경쟁할 수 없음. 이는 게이트키퍼의 CPS 또는 부가 서비스의 사업이용자가 제공 및 생성한 (또는 사업이용자의 최종이용자가 제공 및 생성한) 비공개 데이터에도 적용됨

- 예시 : 아마존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제3자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상품 페이지 방문, 판매 패턴 및 수익 데이터)를 자사 판매자로서 이와 경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음.

제5조 게이트키퍼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gb) 앱 제거 또는 기본 설정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가 사전 설치된 CPS를 처음 사용할 때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사용 가능한 주요 제3자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가 사전 설치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허용해야 함. 이는 운영체제 또는 장치의 기능에 필수적인 앱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제3자가 독립실행형standalone으로 제공할 수 없는 앱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예시 : 애플은 애플 뮤직이나 iBooks 처럼 아이폰에 사전 설치된 앱을 유저가 삭제할 수 있게 해야 함
-

의무사항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aa)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타겟광고 금지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로부터 GDPR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스스로의 상업적 목적 또는 제3자 광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결합할 수 없음 (참고 : 아동 청소년에 대한 타겟 광고는 GDPR에 따라 전면 금지)

- 예시 :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겟광고로 사용할 수 없음
-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c) 사이드로딩 sideloading 제한 금지

게이트키퍼는 제3자 앱 또는 제3자 앱 스토어를 자신의 운영체제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 허용해야 함. 또한 CPS 외부(게이트키퍼 외 다른 수단을 통해)에서 이러한 앱 및 앱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게이트키퍼는 다운로드된 앱(및 앱 스토어)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최종이용자에게 알림을 줘야 함.

게이트키퍼는 이러한 제3자의 앱(및 앱 스토어)이 운영체제나 장치의 무결성,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시 :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 스토어 외부에서 즉 제3자 앱 개발자로부터 직접 설치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d) 자기 우대 self-preferencing 금지

게이트키퍼는 순위ranking 또는 기타 설정에서 제3자의 제품 및 서비스와 자사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비교해 자사의 것을 우대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제3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투명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해야 함

- 예시 : 구글은 구글 검색 결과 순위에서 자사의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구글 쇼핑)을 제3자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에 비해 우대할 수 없음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e) 전환 switching 제한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가 다른 앱과 서비스로 갈아타는 걸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ISP의 다른 공급자로 전환하는 걸 막을 수 없음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ea) 구독 취소/탈퇴 unsubscribing 제한 행위 금지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가 CPS 구독을 취소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음

- 예시 :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탈퇴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렵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없음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f)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허용할 의무

게이트키퍼는 사업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하드웨어 제공자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고 이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허용해야 함. 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게이트키퍼의 부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함.

게이트키퍼는 이러한 상호운용성이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시 : 애플은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가 자사의 애플뮤직과 상호운용되는 경우 (음성 명령어를 사용해 애플 뮤직 앱을 제어하는 등) 스포티파이가 음성 비서 시리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fa) 전화번호에 의존하지 않는 개인간 통신 서비스와의 상호 연결 interconnect 허용 의무

게이트키퍼는 자사의 개인간 통신 서비스(CPS로 식별된 서비스)가 다른 개인간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이러한 상호 연결은 게이트키퍼, 자회사 또는 파트너사에 의해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 및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즉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해야 함

- 예시 : 왓츠앱은 다른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텔레그램 등)와 왓츠앱의 상호 연결을 허용해야 함
(메타(구 페이스북)의 경우 자사 메시지 서비스인 왓츠앱과 또 다른 자사 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상호 연결하여 제공할 것을 밝힌 바 있음)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fb)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의 상호 연결 허용 의무

게이트키퍼는 자사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CPS로 식별된 서비스)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와 상호 연결을 허용해야 함. 게이트키퍼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면서 기능적 상호 작용을 허용해야 함

- 예시 : 페이스북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텀블러 등)와 페이스북의 상호 연결을 허용해야 함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g) 광고 성과에 대한 투명성 보장 의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는 광고주 및 퍼블리셔와 광고주 및 퍼블리셔에 의해 허가된 제3자에게 게이트키퍼의 성과 산정 도구에 접근하고 광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예시 : 페이스북은 광고주들에게 특정 광고 캠페인의 영향 (특정 광고를 표시하여 거래/방문 등이 발생한 횟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광고주에게 제공해야 함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h) 최종이용자의 데이터 이동성 data portability 보장 의무

게이트키퍼는 최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CPS를 이용하며 제공하거나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이동성을 제공해야 함

- 예시 :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다른 소셜 네트워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i) 사업이용자(또는 그 최종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공 의무

게이트키퍼는 사업이용자(또는 그 최종이용자)가 게이트키퍼의 CPS나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여 제공 또는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간 접근을 사업이용자나 사업이용자가 허용한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의 경우 사업이용자가 최종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 애플은 최종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iOS 앱을 통해 서비스를 구독한 최종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앱 서비스 제공자(사업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걸 거부할 수 없음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j)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3자 온라인 검색 제공업체에게 제공할 의무

게이트키퍼는 자사 온라인 검색 엔진의 최종이용자가 생성한 순위, 쿼리, 클릭 및 방문(view) 데이터를 (무료 및 유료 검색 모두 해당)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3자 온라인 검색 엔진에 제공해야 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쿼리, 클릭 등 데이터에 대해서는 익명화가 수반되어야 함

- 예시 : 구글은 경쟁 온라인 검색 엔진의 공급자의 구글 검색의 쿼리 데이터 요청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음

제6조 추가 특정될 수 있는 의무

Obligations for gatekeepers 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k)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접근 조건 적용

게이트키퍼는 CPS에 대해 사업이용자의 투명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일반 접근 조건을 적용해야 함

- 예시 : 애플은 명확한 설명 없이 앱 스토어에 있는 앱 개발자들에게 서로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제12조 기업 결합 신고 의무

Obligation to inform about concentrations

- 게이트키퍼는 다른 CPS 제공업체 또는 다른 서비스를 인수하는 경우 결합 이행 이전에 기업결합규칙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모든 게이트키퍼의 기업 결합은 신고대상
 - 이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관련 경쟁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와는 상관없음
 - 이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CPS목록 수정, 게이트키퍼 지정, 시장 경쟁상황 모니터링, 시장조사 권한 발동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함
 - 신고의 내용에는 최소한 인수 대상의 유럽경제지역 및 전세계 연간 매출, 관련 CPS의 경우 각각의 연간 매출, 연간 활성 사업이용자 수 및 최종이용자 수, 결합 이유 등 포함
 - 게이트키퍼는 기업 결합 이후 추가적인 CPS가 제3조(2)의 기준(이용자 수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제13조 감사 의무

Obligation of an audit

- 게이트키퍼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CPS에 적용되는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술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된 설명을 집행위원회 및 High Level Group of Digital Regulators(제31조(a),(b))에 제출해야 함

*집행위원회는 EU데이터 보호 감독관, 데이터보호위원회,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개발해야 함

**게이트키퍼는 사업상 비밀을 고려하면서도 감사된 설명의 개요를 대중적으로 공개해야 함

의무준수

- 게이트키퍼는 집행위원회가 CPS를 식별한 후 가능한 빨리, 4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함 (제3조8)
 - 게이트키퍼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제7조1a / 제7조 1b)
 - 일반적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모든 의무가 적용되며, 게이트키퍼가 아직 확고하고 견고한 시장 지위를 누리지 못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견될 경우에 근거하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임. (제15조(4))
 - 의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수 있음 (제36조a)
 - 게이트키퍼는 사업 운영 기능으로부터 독립된 의무 준수(compliance) 기능을 확립해야 함 (제24조b) (의무 준수 책임자를 포함해 1명 이상의 담당자를 임명해야 함 / 의무 준수 기능이 충분한 권한과 위상 및 자원을 가져야 하며 게이트키퍼가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게이트키퍼의 관리 부서 management body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의무준수

-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가 시행하려고 하거나 시행한 조치가 효과적인 의무 준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시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제7조(2))
 -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가 실시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결정을 채택할 경우, 절차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예비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요를 발표해야 함 (제7조(2))
 -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채택하기로 선택한 경우, 절차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이를 채택해야 함.

*우회방지조항 (초안에는 11조, 수정안에는 제6조a(1a)) :

게이트키퍼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와 형식적이나 개념적 또는 기술적으로 구별되는 행위라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목적이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의무준수

설명 / 명료화 Clarification

제7조는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
(제5조의 의무는 해당하지 않음)

1. 게이트키퍼는 적절한 의무 준수 방법에 확신이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설명을 요청해서 시행해야 하는 조치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집행위는 이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제3조(8)의 4개월이라는 시행기간을 2개월 연장시킬 수 있음
(제7조1b)

2. 게이트키퍼는 제3조(8)의 실시기간인 4개월 중 시행한 또는 시행할 조치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개시를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집행위원회는 절차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제7조(7))

의무준수

정지 Suspensions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CPS에 대한 제5조 또는 제6조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음.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함 (제8조(1))

게이트키퍼는 의무의 준수가 게이트키퍼의 통제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EU내 운영에 있어 경제적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정지된 경우에는 매년 이 결정을 검토하여 정지의 조건이 계속 충족되는지 여부와 전부 정지 해제 및 부분 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함

의무준수

면제 Exemption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게이트키퍼의 제5조 또는 제6조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 (제9조(1))

이는 공중 도덕 morality, 보건, 안전을 이유로 한 경우임

시장 조사 도구

Market Investigation Tool

DMA는 다음 3가지 목적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시장 조사 도구를 부여.

- (1)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
- (2) 게이트키퍼에 의한 체계적/조직적 systematic 의무 위반 조사를 위함
- (3) CPS의 목록 및 의무 목록을 갱신하기 위함

-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개시하는 결정을 채택해야 함.
 - 조사 후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관련 사업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종료된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음.(제14조(1))
-

시장 조사 도구

Market Investigation Tool

(1)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 조사

집행위원회는 CPS의 제공자가 제3조(6)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제3조(7)에 따라 게이트키퍼에 대한 CPS를 식별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15조(1))

- 집행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예비 조사 결과를 전달해야 하며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함 (제15조(1), 제15조(2))

시장 조사 도구 Market Investigation Tool

(2) 체계적/조직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장 조사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가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4개월 이내에 게이트키퍼에게 필요한 반론objections을 전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구제조치가 유효하며 필요하고 비례적인지 설명해야 함. 또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함. 이는 최대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음 (제16조(1), 제16조(5))
 -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직적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게이트키퍼의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의무 사항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행태적, 구조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제16조(1))
 - 조사 개시 전 10년의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최소 2건의 과태료 또는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경우 게이트키퍼는 조직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됨
-

시장 조사 도구

Market Investigation Tool

(3) 새로운 CPS와 의무 목록을 위한 시장 조사

집행위원회는 제2조(2)의 CPS 목록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지 또는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17조)

- 집행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18개월 이내에 공개적인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 집행위원회는 사업이용자 또는 최종이용자에게 중대하고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시 조치(interim measures)를 취할 수 있음 (제17조(ba))
-

기타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 권한

Requests for information...interviews and take statements... on-site inspections...

그의 DMA는 집행위원회에 추가적인 다양한 권한을 부여함.

- 사업체와 정부 및 당국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제19조)
- 인터뷰 및 진술statements 실시 (제20조)
- 현장 검사 수행 (제21조)
- 제5조 또는 제6조 위반에 대해 일견 prima facie 의 판결에 근거해 게이트키퍼에 대한 임시조치 명령 (제22조)
- DMA의 효과적인 실시와 의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 실시 (외부 전문가 및 감사 선임) (제24조)

*DMA는 또한 신고/분쟁 등 제도를 확립하고 있음. 사업이용자, 최종이용자 및 경쟁업체는 DMA에서 다루는 게이트키퍼의 행위에 대해 관할 국가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위원회에 보고됨. (제24조a)

미준수/의무위반 Non-compliance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의무 위반 결정을 채택해야 함 (제25조(1))

- 제5조 또는 제6조의 의무사항들
- 제7조(2) 구체적인 조치
- 제16조(1) 구제조치
- 제22조 임시조치

-> 12개월 이내에 결정 채택 및 그 전에 예비 조사 결과를 전달해야 함 (제25조(1a), (2))

-> 결정은 게이트키퍼에게 의무 준수 및 의무를 준수할 계획을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함 (제25조(3))

집행방식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Fines and periodic penalty payments

	과징금 (제26조(1))	과징금 (제26조(2))	이행강제금(제27조)
대상	게이트키퍼	사업체(게이트키퍼 포함)	사업체 (게이트키퍼 포함)
내용	게이트키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5조의 위반 결정)	사업체가 고의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3조(2),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다루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제16조(1),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 준수 및 결정을 강제하기 위함
액수	전년도 전세계 총 매출액의 4%~20%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	1일 당 전년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

*제재금 부과 및 집행
시한은 5년
(제28조, 제29조))

- **유럽디지털규제고위그룹 European High-Level Group of Digital Regulators**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대표자, 관련 유럽연합 기관의 대표자, 국가 경쟁 당국의 대표자, 데이터 보호/전자 통신/소비자 보호 등 특정 분야의 국가 당국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형태로 유럽디지털규제고위그룹을 설립해야 함.
주요 업무는 자문, 전문 기술 및 지식 제공과 권고 (시장 조사 실시 또는 의무 목록 갱신 등에 대한)를 통해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임 (제31조(a), (b))
- **모니터링과 집행 지원**
국가 당국은 DMA 의무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집행위원회를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또한 정보 수집, 전문 지식 제공 및 신고 수집을 통해 집행위원회의 일부 집행 조치 (시장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지원할 수 있음. (제31조c)
- **협력과 조정**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집행 조치를 조정해야 함 (제32조)
-> 국가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거나 게이트키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DMA에 반하는 국가적 조치를 막을 수 있음
-> 집행위원회와 국가 당국은 DMA 또는 관련 국내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음

집행방식

국가 당국과 관계

- **디지털 시장 자문위원회 Dig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위의 지원을 받으며,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 (제31조d)
- **시장 조사 요청**
2개 이상의 국가 당국이 시장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집행위원회는 4개월 이내에 조사를 개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